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004
----------	-------

발의연월일 : 2026. 1. 13.

발 의 자 : 한정애 · 박홍배 · 김기표
유동수 · 김주영 · 한민수
채현일 · 홍기원 · 김남희
박상혁 · 허 영 · 최혁진
이정문 · 이수진 · 박희승
송옥주 · 김영배 의원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인자로 규정하고, 구인자에 대해서는 채용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거짓 채용 광고 등 각종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모범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이 현행 구인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위와 같은 금지 의무 및 제재를 적용하는 데 불필요한 법 해석상 논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A씨의 국립외교원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조사에서 국립외교원이 「채용절차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제처에 국립외교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를 질의했지만, 법제처가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국가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다고 답변하면서 법 해석상 논란이 발생함.

이에 구인자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 등이 모범 고용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채용하려는 자”를 “채용하려는 자(공공기관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인자”란 구직자를 <u>채용하려는 자</u> 를 말한다.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u>채용하</u> <u>려는 자(공공기관을 포함한</u> <u>다)</u> -----. 1의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u>목의 기관을 말한다.</u> <u>가. 국가기관</u> 1) <u>국회, 법원, 헌법재판소,</u> <u>중앙선거관리위원회</u> 2) <u>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u> <u>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u> <u>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u> <u>그 소속 기관</u> <u>나. 지방자치단체</u> <u>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u> <u>한 법률」 제2조에 따른</u> <u>공공기관</u> <u>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u> <u>지방공사 및 지방공단</u> 2. ~ 6. (생 략)